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8일, 안호영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7. 8.)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8. 26.)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호영의원)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및 그에 연관된 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 나.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 다.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 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안 제33조의2 신설).
- 라.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0조의3 신설).
- 마.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99조의2 신설).
-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액

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116조의5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이광희 의원)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다수의 특례가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면서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등 자치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 및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적정 수준과 범위를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